



아들 사망 전에 손자에게 임야를 증여한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관계는...



김나예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들 3명이 있는 할아버지는 A, B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3명의 자녀 중 첫째 아들은 2006년에 사망하였고 할아버지는 2009년도에 사망하였다. 할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살아 있을 당시 첫째 아들의 자녀인 손자에게 A 임야를 증여하였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남은 상속재산인 B부동산에 대하여 할아버지의 둘째, 셋째 자녀는 상속인, A 임야를 증여받은 손자는 대습 상속인의 지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둘째, 셋째 자녀들이 주장하기를 임야를 증여받은 손자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A부동산을 이미 증여받았기에 손자는 더 이상 B부동산에 대해 상속받을 수 없고 또는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주요판단을 내려 주목이 된다.

우선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제1001조)으로 위 사안에서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들은 손자가 증여받은 A임야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수익 규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본 사안은 손자가 임야를 증여받은 뒤 할아버지가 사망, 그 뒤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특별수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습 상속인이 됨으로써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손자가 아버지의 사망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손자는 B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받은 것도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